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7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 김승수 · 이종성 · 이명수

김용판 · 김예지 · 정진석

이종배 • 이주화 • 추경호

박덕흠 • 박성중 • 한무경

윤재옥 · 김성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방해할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응 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처 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급차를 막아 세운 운전자에 대한 처 분이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제 2항제1호).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1호 중 "응급의료를"을 "응급의료 및 구급차등의 이송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	
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u>포함한다)와 구급차등</u>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	
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	
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생 략)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u>.</u>
1. 제12조를 위반하여 <u>응급의료</u>	1응급의료
<u>를</u>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및 구급차등의 이송을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